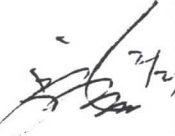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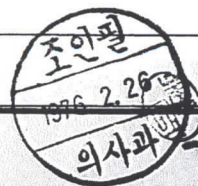


사전감사대상

문서 기번호	외환 601 — 211		수석 검사역	 감사 	
기안	1976. 2. 25.	보존 기간	영구	이 사 부총재 총 재	
발신	1976. 2. 26.				
대리	과장	차장	부장	      	
外換管理 部外換管理 科		합의 企画部長		직무권한 규정 제 장 제 설 제 항 제 호	
기안자 企画係 전화 417		참조		전결근거	
수 신 참 조 제 목 輸出換어음担保貸出取扱細則 一部改正					
金融団協定の 改正으로 1976. 3. 2 부터 外國換銀行 의 換価料徵求期間이 従来の 12日에서 15日로 変更 됨에 따라 當行의 輸出換어음担保貸出期間을 15日(現在 12日)로 改正하는 것이 所望스러운 것으로 思料되옵기 「輸出換 어음担保貸出取扱細則」을 別案(1)과 같이 改正하고자 하오며 別案(2, 3)과 같이 當行 支店長 및 外國換銀行長 앞으로 通報하고자 합니다.					
有添 1. 細則 改正(案) 268					
2. 外國換銀行長 告 通報(案)					
3. 當行 支店長 告 通報(案)					

() 456



137

277

한 국 은 행

년 월 일

「輸出換어음担保貸出取扱細則」一部改正案

現 行	改 正 (案)
第5條(支給豫定日)の"規程"	第5條(支給豫定日)の"規程"
第4條但書の支給豫定日이라	第4條但書の支給豫定日이라
같은 外國換銀行의 어음買入日	같은 外國換銀行의 어음買入日
로부터 起算하여 当該어음期間	로부터 起算하여 当該어음期間
에 郵便日數(12日)을 加算한	에 郵便日數(15日)을 加算한
날로 한다.	날로 한다.
	附 則
	1. (施行日字) 이 細則은
	1926年 3月 2日 부터
	施行한다.
	2. (経過措置) 이 規程 施行日現在
	이미 融資取扱된 貸出金額 對於
	從前規程을 繼續適用한다.